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40호

「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행복주택의 미임대 해소를 위해 완화된 입주자격에 따라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으로 입주하게 된 자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행복주택 공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입주한 자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“일반”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하고 부과기준 마련 (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40호

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

「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」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가목중 “기존거주자로서”를 “기존거주자 또는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중 “가구당 월평균소득을”을 “가구당 월평균소득(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기준중위 소득의 150퍼센트)을”로 한다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)</p> <p>①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적용 대상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가. 규칙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른 <u>기존거주자로서</u> 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</p> <p>나. (생략)</p> <p>2. 부과 방법</p> <p>가.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: 공급대상 계수를 0.80으로 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</p>	<p>제9조(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적용 대상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가. ----- <u>기존거주자 또는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부과 방법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. 다만, 갱신계약 시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제3호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

나. (생략)

3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 가구당 월평균 소득(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제94조의2제4항에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기준중위소득의 150퍼센트)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제3호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

나. (생략)

3. (생략)

② (생략)